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지방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징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내 용

지방○○주사 ○○○ 2015. 7. 21.부터 2016. 7. 12.까지 충청남도 ○○○○
과에서 근무하였다.

1. 2015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사전 면접 관련 정보교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있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충청남도 아산시(○○○○과)의 ○○○은 자신의 아들이 2015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직 시험에 1차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실시(2015. 8. 31.부터 9. 4.까지 5일간)하게 됨에 따라 면접관련 정보를 충청남도(○○○○과) ○○○에게 면접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청탁하였다.

청탁을 받은 충청남도(○○○○과) ○○○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에도 ‘3농 정책 주요 추진계획, 브로셔 등’을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아산시 ○○○과장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또한, ○○○은 위 관서(충청남도 ○○○○○과)에서 근무하는 ○○○ 팀장과 ○○○ 주무관이 면접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엿듣고, “○○○○과 ○○○ 팀장이 면접관으로 선정 되었다”는 내용과 “면접관은 1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3명이 들어가는데 그 중 한명은 ○○직이 면접관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2015. 8. 27. 17시에서 18시 경에 ○○○과장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더구나 ○○○ 과장은 자신의 아들이 2015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농업직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자 2015년 10월경 ○○○ 아산시 ○○장(현, 충청남도 ○○○○○장)에게 4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건어물 등의 선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은 상기 선물을 받은 후 ○○○과장에게 “과장님 오늘 집에 와보니 과하게도 ○○님 선물이 또 와 있나요. 지난 추석 때도 미안한 마음뿐인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

다.

또한, ○○○과장은 ○○○ ○○장에게 ‘○○장님 약소합니다. 아들이 우연케 공직에 입문한 것이 주의의 격려나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맘적으로 위안이 되어 열심히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면접관이 10개조로 구성되는 등 관련 정보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응시자에게 전달됨으로써 공직채용에 대한 행정신뢰를 실추 시키고,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채용에 대한 의혹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2. 2015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면접관 서약서 분실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등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

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면접관에게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면접관의 서약서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충청남도 ○○○○과)에서는 2015년도 9급 행정직 등 공개 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이 2015. 8. 31.부터 9. 4.까지 5일 150명의 면접위원을 선정하여 서약서를 징구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면접 당일 30분전에 서약서를 징구하고, 사무실 보관과정에서 과실로 분실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서약서 징구의 사실여부 및 서약서 내용 등이 파악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 채용 관련 정보교환 등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은 아산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부적정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중징계요구가 병합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징계] 위 관련자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면접시험 위원의 서약서를 기록물 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하는 등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